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1. 10. 19.(화) /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건축안전과	담당 자	• 과장 오진수, 사무관 최민중, 주무관 노운용 • ☎ (044) 201-4989, 4986
보 도 일 시		2021년 10월 20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19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해체공사 지속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강화

- 서울소재 60개 현장안전·해체계획서 점검... 중대지적사항 11건 적발...
-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지역건축안전센터와의 협력 강화할 계획..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지역건축안전센터와의 협력을 높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- 지난 8월 10일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책에 따른 법령개정에 절대 소요시간이 필요하며 대책발표 이후에도 해체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
- 전국 지자체의 자체점검(9.30~10.15)을 요청*하는 동시에 서울 소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(32개)을 추진하고, 미착공 현장(28개)의 해체계획서를 집중 검토하였다.

* 지자체별 현장점검결과의 경우 10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할 계획

□ 점검결과에 따르면 현장점검을 실시한 32곳에서 해체계획서 내 안전점검표 미비, 현장시공·관리상태 일부 미흡 등 총 69개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, 이 중 중대위반사항은 11개(11곳)가 적발되었다.

- 미착공현장 28개에 대한 해체계획서 검토결과, 19개 현장에서 구조계산서 미작성, 안전점검표 미비, 작업순서 작성 미흡 등의 사유로 해체계획서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.

□ 지난 광주 붕괴사고 이후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지난 6월에 실시한 전국 해체공사 현장 점검에 비해 중대부실 지적* 현장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**으로 나타났으나,

* 해체계획서 필수작성 사항 미작성, 폐기물·잔재물 안전관리, 안전가시설 미설치·설치미흡 등 현행기준의 위반한 사항

** (6월) 57개 현장 중 55개 지적 → (금번) 22개 현장 중 11개 지적

○ 해체계획서 작성의 경우 지난 점검과 같이 부실하게 작성하는 현장수준이 여전히 높은 것*으로 나타났다.

* (6월) 16개 현장 중 16개 지적 → (금번) 28개 현장 중 19개 지적

□ 현장의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추후 조치 이후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고,

○ 중대부실 지적현장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관리자(10건), 감리자(1건) 등 위반사항 대상자에게 과태료*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.

* (관리자) 해체계획서 부실작성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

(감리자)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에 대한 미조치 등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

※ <처분절차> 적발사항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로 행정조치를 요청한 이후, 지자체별로 관계자 청문 등을 거쳐 위반사항별 최종 조치수준 결정

□ 국토교통부는 현장 안전관리·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리 일지 상시등록 시스템을 도입·시행('21.10.19)할 계획이며, 연말까지 감리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를 추진 중이다.

○ 또한,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지침을 마련(~'21.12)하고 해체허가 시 지역건축안전센터*의 해체 계획서 사전검토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며,

*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·허가 및 공사장 점검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

-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기준(건축사 기술사)신설, 해체심의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질 경우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발의되어 있는 관련 개정법률*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.

* 「건축물관리법」 개정법률안 2건, 「건축법」개정법률안 1건

- 더불어 지자체 자체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*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장관계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도록 하고,

* 금년의 경우 9.1일~10.29일 동안 해체공사현장을 포함하여 실시



- 지난 8월 10일 발표한 ‘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’의 세부추진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.

- 지난 10월 12일에는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현장인 대구 중앙로 소재의 차량통행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과 대로변에 인접한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하였으며,

-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여부, 안전관리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이후 해당 현장이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공사 관계자에게 당부하였다.

-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“해체공사 안전대책 발표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중대한 현장관리 미흡사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미흡사항이 적발되는 현장이 많고 해체계획서 작성미흡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”면서,

- “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공사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 센터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 <p>홍재토시</p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최민중 사무관(☎ 044- 201-4989)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-	--